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46호(1968.06.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0-397호(1990.12.04.), 성북구고시 제1995-9호(1995.02.1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23호(1995.11.24.), 제1997-64호(1997.09.02.), 제2004-348호(2004.11.10.), 제2011-148호(2011.06.0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9일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 결정 취지

- 2014년 6월12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고시된 북악스카이웨이 1교에 대하여 교량 개축을 통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인근 주택 거주자의 안전확보 상 가교가 필요하며, 또한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폭원증가가 필요하므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을 하기 위함.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5-1	8~28	집산 도로	8,960	미아리 고개	자하문	일반 도로	-	서고46 (1968.6.19.)	
변경	중로	3	65-1	8~28	집산 도로	8,960	미아리 고개	자하문	일반 도로	-	서고46 (1968.6.19.)	북악스카이 1교 부근 면적 변경

다.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 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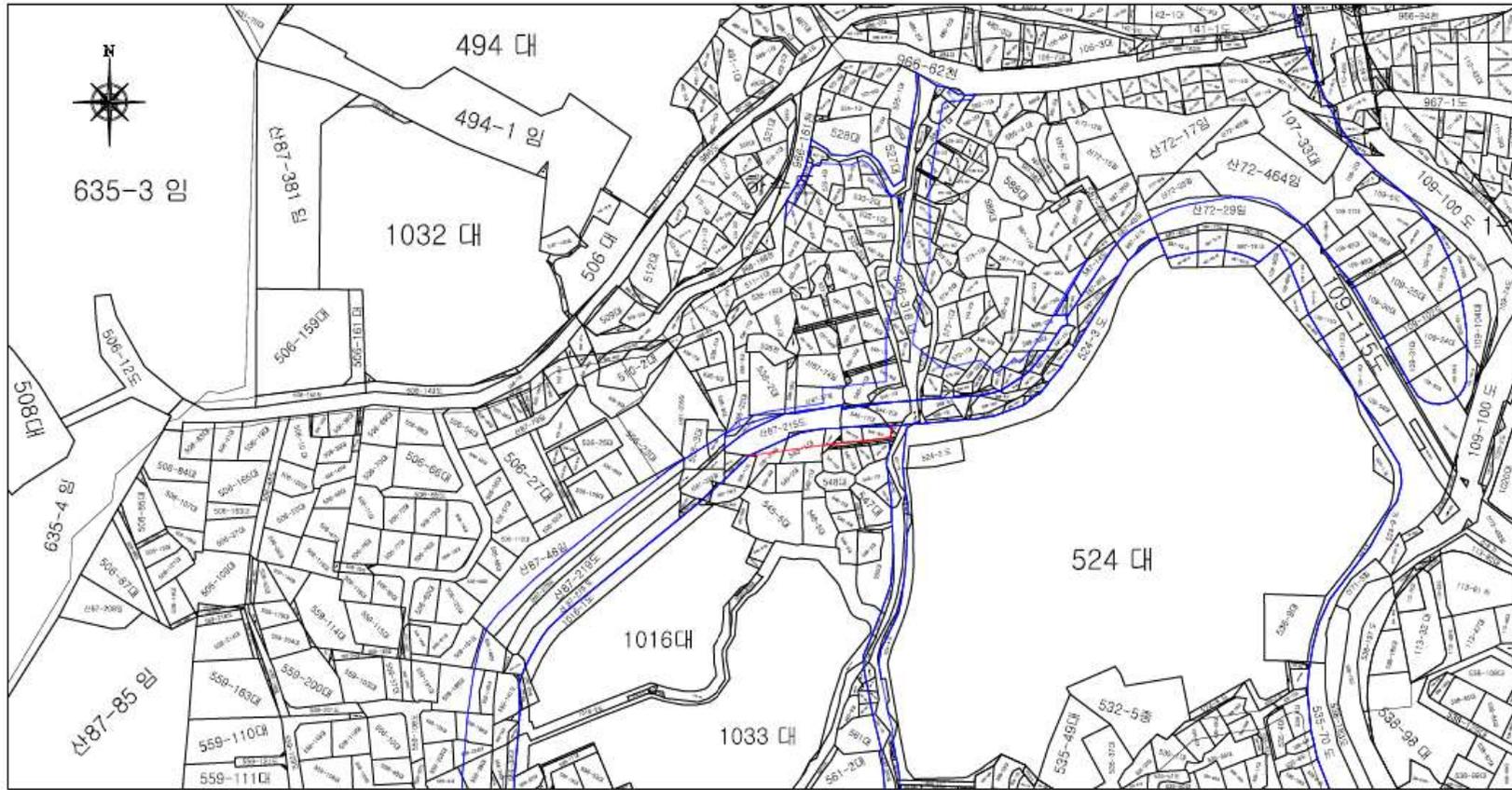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북부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 944-5455), 성북구청-도시계획과
(☎ 2241-276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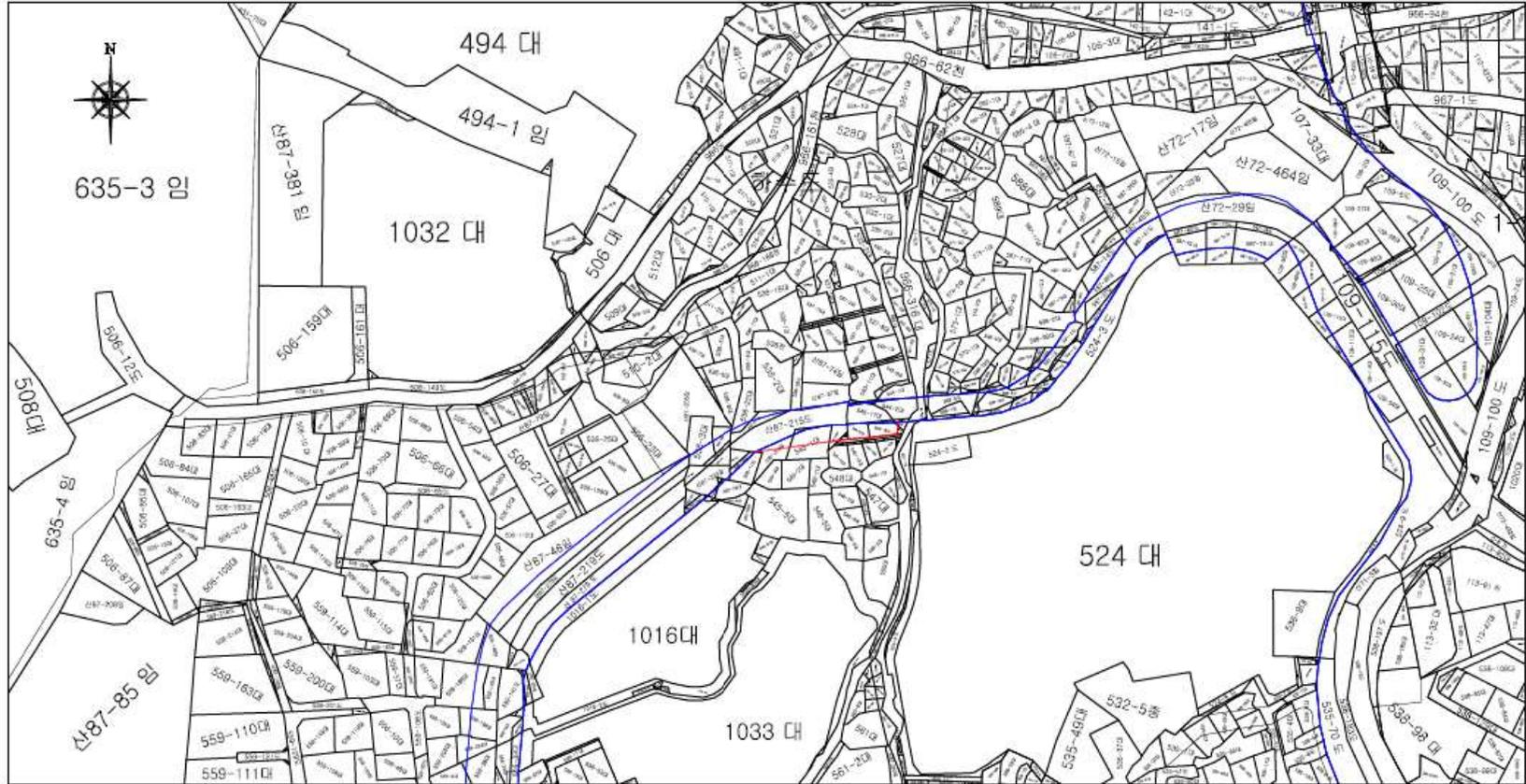
(성북구 정릉동 545-18 일대)

S=1/1000



구분	규모				기종	면적(m)	기법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법례	
	종류	종별	번호	폭(m)									기정	변경
기정	종로	3	65-1	8-28	일반도로	8,960	미이리 고개	지하문	일반도로	-	시고 46 (1968.5.19)		기정	
변경	종로	3	65-1	8-28	일반도로	8,960	미이리 고개	지하문	일반도로	-	시고 46 (1968.5.19)	복합스키이 1교 부근 면적 변경	변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지적도
 (성북구 정릉동 545-18 일대) S=1/1000



구분	구분				기능	면적(m ²)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법 령	
	종류	종별	번호	폭(m)									기 정	법 령
기 정	종로	3	65-1	8-28	일반도로	6,960	미아리교개	지류문	일반도로	-	서고 46 (1966.6.19)		기 정	
변 경	종로	3	65-1	8-28	일반도로	6,960	미아리교개	지류문	일반도로	-	서고 45 (1966.6.19)	복합스카이 1교 부근 연의 변경	변 경	